

화학물질 관리 규정

문서관리번호	DS-화학-221201
담당자(부서)	임종만(정보사업부)

주식회사 다솜에스앤씨

제정 및 개정 이력

일자	사유
2022.12.01	최초 제정
2024.09.16	제2조(적용범위) 수정 -> 회사 전체 임직원으로 특정

(시행일) 본 지침은 등록된 제정 및 개정 일자 이후 즉시 시행한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주)다솜에스앤씨(이하 회사)의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화학물질 사용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고 생산 능력을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 전체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규정으로,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 3 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학물질"이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
2. "유해화학물질"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약품을 말한다.
3. "위험물"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진 화학약품을 말한다.
4. "유해성"란 화학약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약품 고유의 성질을 말한다.
5. "위해성"란 유해성이 있는 화학약품이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6. "지정수량"란 화학약품 종류별 위험성을 고려해서 신고 또는 허가 등을 관계기관에 하는데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
7. "취급"이란 화학약품을 제조, 수입,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8. "취급시설"란 화학약품을 제조,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한다.
9. "화학사고"란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말한다.

제 4 조 (협조의 요청 등) ① 회사의 화학물질 관리업무 담당부서는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임직원 및 협력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② 회사의 임직원 및 협력사는 본사 화학물질 관리업무 담당부서의 권고 또는 요청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 5 조 (사고예방책임) 회사의 전 직원은 화학물질사고에 관하여 공동 책임을 가지며, 구체적인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사는 법에서 정하는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 사항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2. 화학물질 관리업무 담당부서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함에 있어 해당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
3. 회사의 전 직원은 법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사업주 및 화학물질 관리업무 부서가 실시하는 사고예방에 관한 제반 조치에 적극 따라야 한다.

제 2 장 화학물질관리 조직과 직무

제 6 조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선임) ①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2.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

② 다음 기준에 따라, 필요시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취급량/연	10명 미만 (점검원이 책임자 겸임 가능)		10명 이상	
	책임자	점검원	책임자	점검원
1,000톤미만	1명	1명	1명	1명
1,000톤이상~ 10,000톤미만	1명	2명	1명	2명
10,000톤이상~ 100,000톤미만	1명	3명	1명	3명
100,000톤이상~ 1,000,000 톤미만	1명	4명	1명	4명
1,000,000톤 이상	1명	5명	1명	5명

③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선임, 해임 또는 퇴직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7 조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직무)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
2.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필요한 조치
3. 유해화학물질의 진열·보관에 필요한 조치
4. 유해화학물질의 표시에 필요한 조치
5.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이행 및 지역사회 고지에 필요한 조치
6.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
7.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에 필요한 조치

8. 수급인의 관리·감독에 필요한 조치
9.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
10. 화학사고 발생신고 등에 필요한 조치
11.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위해 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

제 8 조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담당자
 3. 수급인과 수급인이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화학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람
- ②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는 관계법령 및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요구하는 조치, 협력 및 교육 사항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3 장 화학물질 안전교육

제 9 조(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화학물질관리 업무 담당 부서는 교육기관 및 실무부서와 협의하여 매년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 10 조(안전교육) ① 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와 대상자별 시간은 ‘별표 1.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 시간’과 같다.

② 대상자별 화학물질 안전교육의 내용은 ‘별표 2.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내용’와 같다.

제 11 조(교육기록 보존) 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위탁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실시 확인서)를 작성하여 3 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실시자
3. 교육과정
4. 출석인원

5. 교육내용

6. 그 밖의 교육실시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 4 장 화학물질관리

제 1 절 허가 및 점검

제 12 조(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허가) 유해화학물질을 기준 이상 사용 및 보관하는 경우, 지방환경관서에 시설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13 조(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 및 안전진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한 경우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별표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대상 및 검사주기'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제 14 조(자체점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 서식을 이용하여 주 1 회 이상 자체점검을 이행하여야 하고, 자체점검 기록을 5 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 2 절 설비 기준

제 15 조(배관설비) ① 배관의 재료는 해당 물질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② 배관은 물질을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는 적절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③ 배관은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강도 및 두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④ 배관 또는 그 배관(제조·사용시설 또는 그 배관의 밸브나 콕은 제외한다.) 중 유해화학물질이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에 의하여 그 부분이 부식되어 폭발·화재 또는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질의 종류·온도·농도 등에 따라 부식이 잘 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거나 도장(塗裝)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조·사용 시설 및 설비 중 밸브 등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취급자가 그 밸브 등을 적절히 조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가. 밸브 등에는 그 밸브 등의 개폐방향(조작스위치에 의하여 그 밸브 등이 설치된 저장설비에 안전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밸브 등에는 그 밸브 등의 개폐상태를 포함한다.)을 색채 등으로 표시하여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밸브 등(조작스위치로 개폐하는 것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배관에는 그 밸브 등의 가까운 부분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배관내의 물질의 종류 및 방향이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상시 사용하지 않는 밸브 등은 자물쇠를 채우거나 봉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시에 사용하는 것이거나 일반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된 구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밸브 등을 조작하는 장소에는 밸브 등의 기능 및 사용빈도에 따라 그 밸브 등을 확실히 조작하는 데 필요한 발판과 조명도를 확보해야 한다.

마.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에 설치된 스톱밸브는 그 밸브의 수리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완전히 열어 놓아야 한다.

제 16 조(검지·경보설비) 액체나 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은 누출, 폭발 또는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검지·경보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 17 조(긴급차단설비) 유해화학물질의 감압설비와 그 물질의 반응설비 간의 배관에는 긴급 시 물질이 역류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18 조(피해저감 시설) 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바닥은 물질이 스며들지 못하고 해당 물질에 견딜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고체 또는 기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2. 물이 고일 수 없는 구조인 경우

② 액체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의 바닥둘레에는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아니하도록 방지턱, 트렌치, 건축물 벽체 등을 활용한 집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유해화학물질 중 화재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는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질에 적합한 방제약품 또는 방제장비 및 응급조치 장비를 구비하여야 하고, 개인보호장구는 상시 출입자 및 방문객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수량을 비치해야 한다.

⑤ 작업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실내 또는 실외)에 긴급세척시설(샤워시설 또는 세안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하고, 접근통로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물반응성 물질은 제외한다.

⑥ 제조·사용시설 및 그 부속설비는 사고예방 및 피해저감 활동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부착하여야 한다.

제 3 절 취급기준

제 19 조(유해화학물질 취급)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참고하여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유해화학물질 사용공간에는 항상 MSDS 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는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0 조(유해화학물질 표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저장하는 장소는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제 21 조(유해화학물질 보관기준) ① 유해화학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의 보관수량과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지정수량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다.

② 유해화학물질 보관시 물질별 특성을 고려하여 '유해화학물질 혼합적재 기준'에 따라 사고 우려가 없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제 22 조(관리대장) ①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사용·판매 시, '별표 8. 화학물질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 보관 · 저장 시, '화학물질 보관 · 저장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유해화학물질 취급·보관·저장시설에 외부인 또는 대리참관자가 출입할 시, '외부인 및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대리참관자 출입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 14 조 1~3 항에서 작성한 관리대장은 작성연도로부터 5 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 23 조(개인보호구)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는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의 성능기준에 맞는 호흡보호구, 보호복 및 안전장갑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 5 장 화학사고 대응

제 24 조(화학사고 발생신고) ① 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취급시설의 가동중지 등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취급자가 시설의 화학물질 누출 등 화학사고를 발견한다면 즉시 관리부서장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보고받은 자는 15 분 이내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별표 1.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 시간

교육대상		교육시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유해화학물질관리자		매 2 년마다 16 시간
유해 화학 물질 취급 담당자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매 2 년마다 16 시간(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매 2 년마다 8 시간)
	수급인과 수급인이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매 2 년마다 16 시간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매 2 년마다 8 시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담당자	매 2 년마다 16 시간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화학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람	매 2 년마다 16 시간

별표 2.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내용

대상자	교육내용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가. 「화학물질관리법」 및 일반 화학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및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다. 유해화학물질 유해성 및 분류·표시방법에 관한 사항 라. 유해화학물질 취급형태별 준수사항 및 취급기준에 관한 사항 마.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바. 화학사고 시 대피·대응 방법 및 개인보호구 착용 실습에 관한 사항 사. 화학물질 노출 시 응급조치 요령에 관한 사항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가. 「화학물질관리법」 및 일반 화학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및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다.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분류·표시방법에 관한 사항 라. 유해화학물질 상·하차, 이동, 취급, 보관·저장 시 준수사항 및 취급기준에 관한 사항 마.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바. 화학사고 시 대피·대응 방법 및 개인보호구 착용 실습에 관한 사항 사. 화학물질 노출 시 응급조치 요령에 관한 사항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가. 「화학물질관리법」 및 일반 화학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나.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표시 및 운반계획서 작성에 관한 사항 다. 유해화학물질 상·하차, 이동 시 준수사항 라. 화학사고 시 대피·대응 방법 및 개인보호구 착용 실습에 관한 사항 마. 화학물질 노출 시 응급조치 요령에 관한 사항

별표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대상 및 검사주기

구분		시기/주기
설치검사		취급시설 설치 후 가동전
정기검사	영업허가 대상	1 년마다
	영업허가 비대상	2 년마다
수시검사	화학사고 발생	사고발생 후 7 일 이내
	화학사고 발생 우려	지방환경관서 장의 통지
안전진단	설치/정기검사 결과 시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될 경우	검사 결과 받은 날로부터 20 일 이내